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82

발의연월일: 2025. 1. 9.

발 의 자: 박정하・임오경・주호영

박덕흠 • 배준영 • 조지연

조은희 • 장동혁 • 김재섭

한지아 · 백종헌 · 김 건

김위상 · 김재원 · 양문석

이기헌 · 임광현 · 강유정

김윤덕 · 조계원 · 김현정

한병도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필요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신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목적 및 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 으로 명기함으로써 당초 취지와 일부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2024년 기준 종단 차원의 관람료 감면을 약속한 대한 불교조계종 산하 사찰 63개소를 제외하고는 1개 사찰만이 추가로 관람료를 감면하고 그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감면된 관람료 지원 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적극적인 공개를 유도하고 관람료 제도의 당초 취지를 감안하여 관람료 사용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산의 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 고자 함(안 제49조제4항). 법률 제 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 중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을 "관람료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람료 감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관람료 감면에 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	
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u>국가</u>	<u>대통</u>
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u> </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u>관람료를</u>
라 감면된 <u>관람료에 해당하는</u>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